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31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 한병도 · 신영대 · 윤준병

안호영 · 이춘석 · 이성윤

박희승 • 이워택 • 정동영

황정아 · 신정훈 · 김윤덕

유건영 • 박정현 • 양부남

김성회 · 위성곤 의원

(1791)

제안이유

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'글로벌생명경제도시'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,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인 재정 에 대한 특례가 제외되었고, 지방소멸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의료복지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특례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전부개정법률에서 빠지게 됨.

따라서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뿐만

아니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위한 핵심 요소의 자치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, 안정적인 재정 확보,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인구 제도와 전북형 귀농 정책의 추진,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·운영(안 제24조의2 신설)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농생명산업지 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, 국가 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(안 제57조)

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,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·매각·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'새만금 고용특구' 추가(안 제63조)

법무부장관이 연구기관·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함.

라. 지방소멸 대응 인구유입 제도(안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신설)

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도지사가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생활인구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에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.

- 마.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(안 제83조의2 및 제116조의4 신설)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.
- 바.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(안 제116조의2 신설)

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사. 안정적인 재정 확보(안 제116조의3 신설)

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의 100분의 2 5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함.

법률 제 호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지원

제24조제1항 중 "도지사는"을 "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·군수는"으로, "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"을 "공유재산"으로, "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"를 "종사하는 자"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산술평균한 금액"을 "산술평균한 금액 이상"으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)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

수 있다.

-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·운영 및 지정 ·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인구감소지역"을 "인구감소지역"이라 "인구감소지역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"을 "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"로, "완충구역"을 "보호지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6항을 각각 제5항, 제6항, 제4항으로 하며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1조제1항제1호"를 "제11조제1항"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「산지관리법」 제10조, 제12조 및 제1 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・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 서의 행위제한,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 한 허가기준, 그 밖의 사업별・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13호 및 「자연공원법」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4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에 따른 궤도시설
- ⑦ 산림청장은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 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.
- ⑧ 산림청장은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・매각・교환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・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- 제6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새만금 고용특구
-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6조의2(청년농업인 지원 특례) ①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에 따

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6조의3(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(이하 "전북자치도 생활인구"라 한다)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·등 록할 수 있다.
 - 1. 성명
 - 2. 성별
 - 3. 생년월일
 - 4. 현재 주민등록지
 - 5. 통근・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・체류하는 사유
 - 6.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·학교 등에 관한 정보(소재지 등을 말한다)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·등록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다.
- ⑥ 누구든지 업무·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3조의2(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) ① 의료인(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)은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,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다만, 외국의 의사·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.

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6조의2(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100분 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6조의3(지방교부세 특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

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6조의4(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)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(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필수의료 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수 있다.
 -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범위 및 절차, 사용처등에 관한 사항은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및 제5조를 준용한다.

제1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6조의5(특례의 존속기한 등) ① 제116조의4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4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 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	제22조(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
지원)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	지원)
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	
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	
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	
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	
원을 할 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	따른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
	업의 지원
제24조(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	제24조(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
사용 및 매각 등 특례) ① <u>도</u>	사용 및 매각 등 특례) ① <u>도</u>
<u>지사는</u>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	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・
리법」 제29조에도 불구하고	<u> 군수는</u>
「종자산업법」 제13조에 따른	
종자기술연구단지 내 <u>전북자치</u>	공유재산
<u>도 소유의 부동산</u> 을 입주기업	
(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	
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	
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	
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	종사

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)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한다.

<u><신 설></u>

<u>하는 자</u>
②
<u>산술평</u>
<u> 균한 금액 이상</u>
세24조의2(농생명산업 전문인력
양성기관 운영 등) ① 도지사
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
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
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・운영
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
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
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
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
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
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
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
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
야선기과의 설치 및 교유후려

제50조(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저 지정)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 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 악관광진흥지구(이하 "산악관 광진흥지구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 <u>역</u>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 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② ~ ⑨ (생 략)

제57조(산악관광진흥지구 내 | 제 「산지관리법」 등 적용의 특 례)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

	<u>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</u>	지
	원을 할 수 있다.	
	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	전
	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・운	영
	및 지정・해제 등에 필요한	사
	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	
	50조(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	구
	지정) ①	
	<u>.</u>	
	인구감소	지
	역(이하 "인구감소지역"이라	한
	<u>다)</u>	
	 1. ~ 8. (현행과 같음)	
	② ~ ⑨ (현행과 같음)	
]	57조(산악관광진흥지구	내
	「산지관리법」등 적용의	특

례)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 는 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 및 는 「산지관리법」 제10조, 제1 2조 및 제18조제5항에도 불구 에서의 행위제한, 산지의 경사 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 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 지구 내의 <u>완충구역</u>에서 산악 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- ⑥ (생략)
- ③ (생 략)
- ④ 도지사는 「산림보호법」

하.	卫	ᄾ	가기	전분	용 •	일	시	사용	<u> -</u> 제	한
<u>기</u>	역	및	보	.전·	산기	이에	서	의	행	위
제 :	한,	산.	지진	신용	허)	가フ]군	의	적	용
<u>범</u>	위요	} ?	산지	의	면	적 (케	관	한	허
<u>가</u>	기년	<u> </u>	ユ	밖	의	사	업 [.]	별・	7	·모
<u>별</u>	세	부	기	준	등	에	관	한	사	항
<u>은</u>	대	통i	경 량	0	로	달:	리	정	할	<u>수</u>
<u>있</u> 1	<u>다.</u>									

- ② 사업시행자는 「백두대간 ② -----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7조--------- 보호지역-----
 - 1. ~ 4. (현행과 같음)
 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산악관 광사업에 대하여는 「궤도운송 법」 제2조제13호 및 「자연공 원법」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에도 불구하고 산악벽지형 궤 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 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④ (현행 제6항과 같음)
 -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 - <u>(6)</u> ----

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 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 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 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, 경관보호구역,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.

<신 설>

제11조제1항
,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에 따
른 궤도시설
<삭 제>

① 산림청장은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 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와 협의하여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 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 분할 수 있다.

⑧ 산림청장은 「국유림의 경

제63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다한 특례) ① (생 략)
1. ~ 4. (생 략)
<<u>신 설></u>
<<u>신 설></u>

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 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 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 ·매각·교환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 유림에 시설물을 기부·철거하 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 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 다.

제63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대 제63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대한 한 특례) ① (생 략)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새만금 고용특구

제66조의2(청년농업인 지원 특례)

①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<신 설></u>

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수 있다.

제66조의3(생활인구 등록 시범사 업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 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(이하 "전북자치도 생활인구"라 한다) 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 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 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 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를 수집·등록할 수 있다.
- 1. 성명
- <u>2. 성별</u>
- <u>3. 생년월일</u>
- 4. 현재 주민등록지
- 5. 통근·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·체류하는 사유
- 6.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· 학교 등에 관한 정보(소재지 등을 말한다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

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 보 수집·등록·절차 등에 관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 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다.
- ⑤ 누구든지 업무·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3조의2(의료인의 의료기관 비 전속 진료 허용 특례) ① 의료 인(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)은 「의료 법」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,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의 의사·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.

제116조의2(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16조의3(지방교부세 특례) ①

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
세법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
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
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
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
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
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
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

<신 설>

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 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 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 부세법」 제8조의3제2항에 따 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 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 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. 제116조의4(지방의료원의 기부금 품 모집 특례)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 방의료원(기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계2조 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 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 <신 설>

-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범위 및 절차,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은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.
- 제116조의5(특례의 존속기한 등)
 ① 제116조의4의 특례는 이 법
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
 그 효력을 가진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4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하고,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 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
 ④
 제2항에
 따른 평가의
 방법

 및
 절차
 등에
 필요한
 사항은

 대통령령으로
 정한다.